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8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구자근・김용판・강기윤

홍준표 • 한무경 • 윤영석

정진석 • 박성민 • 조경태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법률 제11041 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 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로 등록된 사람과 법률 제1104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1호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보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따른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